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알아보기
- 금품등 수수 금지 -

"직무와 관련하여 식사·접대를 받은 교직원뿐만 아니라 제공한 학생도 동일하게 처벌대상!!!"

◇ 금지내용

▶공직자등(**사립학교 교직원 포함**)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금지

▶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(매 회계연도 300만원)을 넘는 금품등 수수 금지

◇ 제재내용

제재대상	제재의 종류
1회 1백만원(매 회계연도 3백만원)을 넘는 금품등을 수수한 **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**	**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**
직무와 관련하여 1회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**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**	**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**

◇ 위반사례

▶학생회비(원우회비)를 걷어 학생(대학원생)들이 주최하는 스승의 날 등 행사에서 교수에게 음식과 선물·상품권 등을 제공

▶학생의 논문 심사시 다과, 선물 및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심사비 외 별도의 금품(이른바 '거마비')을 심사교수에게 제공